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0가단51801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한혜윤, 이선영, 최단비, 김준동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정용기, 조민근, 김영지, 한수진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50,695원과 그 중 67,850,131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9.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3. 12.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0. 3. 12. 접수 제275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원금을 1억 8,000만원, 보증기한을 2020. 8. 31., 대출예정금액을 2억 원, 보증비율을 9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5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2019. 11. 30.경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 23. 중소기업은행에게 68,345,5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68,345,519원 중 495,388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67,850,131원(= 68,345,519원 - 495,388원)이 남아있고, 약정 손해금율은 연 10%이며,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 495,388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564원이다.

라. 피고 B는 2020. 3. 12.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과 시흥시 D아파트 E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외에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67,850,695원(= 대위변제원금 67,850,131원 + 확정지연손해금 564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67,850,1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9. 26.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먼저,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여금 4억 2,663만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C는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00만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1,000만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3,400만원이므로, 피고 C 주장의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흥시 H에 있는 I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흥시 H 대 5686.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212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686.4분의 13.4227. 끝.

